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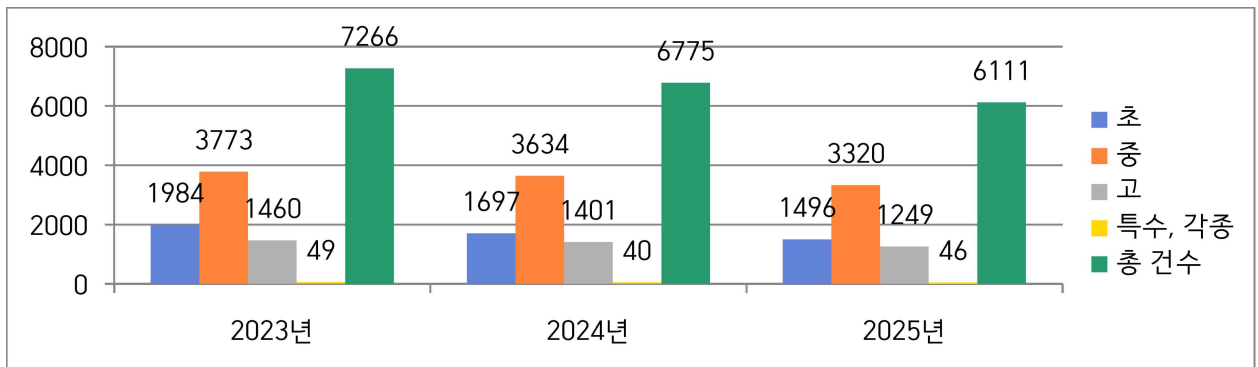
2026학년도 학교폭력 현황 보고

평생진로교육국 |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삼 ☎6033-6050 생활교육팀장 이주석 ☎6051 담당 신재영 ☎605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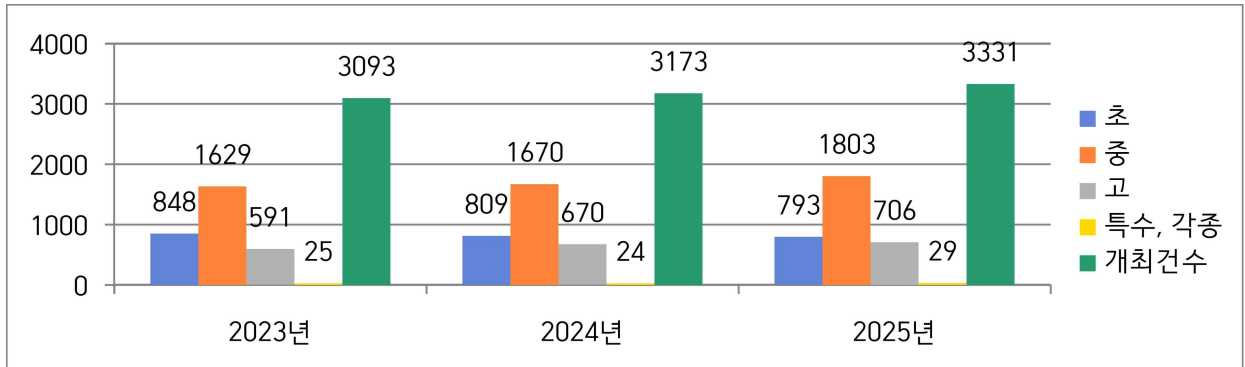
□ 학교폭력 사안 처리 현황

○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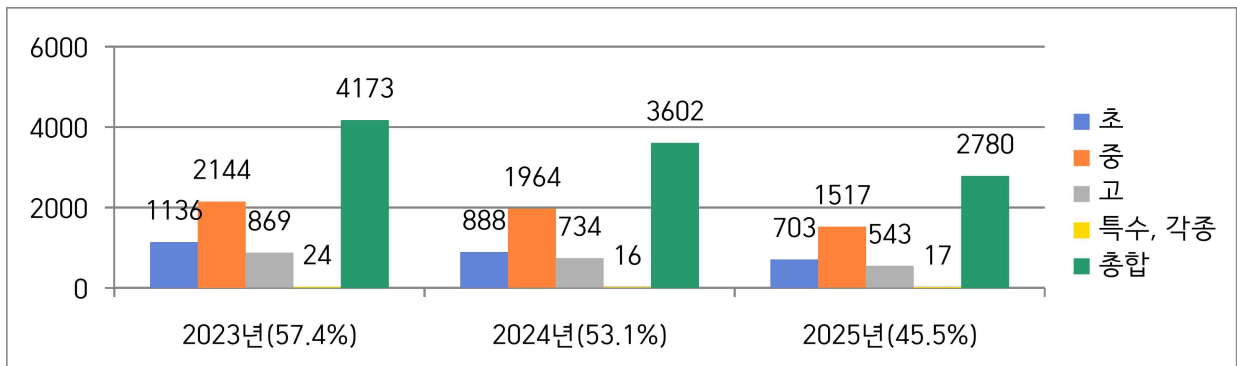
- 학교폭력 신고 건수



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



- 학교장자체해결 건수 및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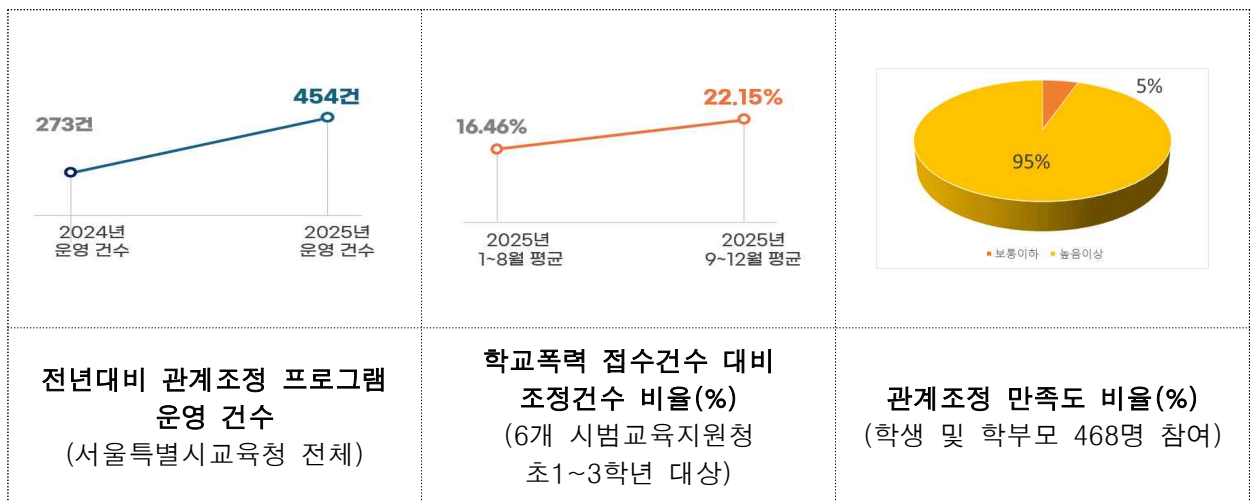


- (현황 분석) 학교폭력 신고 건수 감소,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증가
- (원인 분석)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의 효과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,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 민감도 상승, 사범화 경향으로 흘러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등의 원인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는 증가,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감소
- (해결 방안) 갈등 사안, 경미한 사안 등은 학생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관계조정 프로그램 적극 안내 및 참여 유도 및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

□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노력

1 초등학교 관계회복 숙려제 추진

- 현황
 - 2025년 9~12월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(1~3학년) 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하는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사업 도입
 - 시범교육지원청(6개)의 관계조정 건수 대폭 증가, 참여 당사자의 높은 만족



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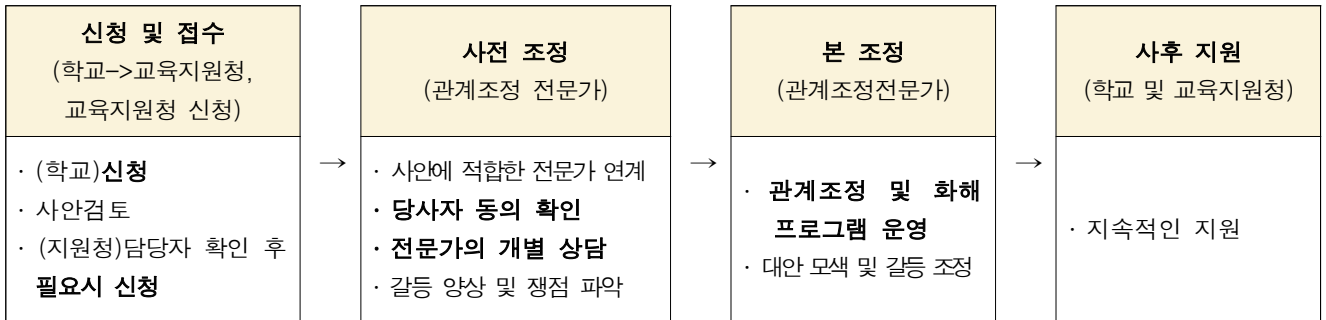
■ '관계조정 지원단'이란?

관계조정 프로그램 등의 안내 및 운영의 역할을 하는 교원, 학부모, 전문단체(관계가꿈 지원 전문단체*) 등 관계조정 전문가로 구성

* 「관계가꿈 지원 전문단체」: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관계조정을 지원하는 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(2023년부터 공모 및 지정)

- 2026년 관계회복 숙려제 초등학교 전체 확대 운영
 - 초등학생 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 실시로 교육적 회복 노력을 우선하고,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 유예
 - 관계조정은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절차대로 심의위원회 진행

(참고) ‘초등학교 관계회복 숙려제’ 운영 절차



-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전체 확대 적용 가능한 관계조정 지원단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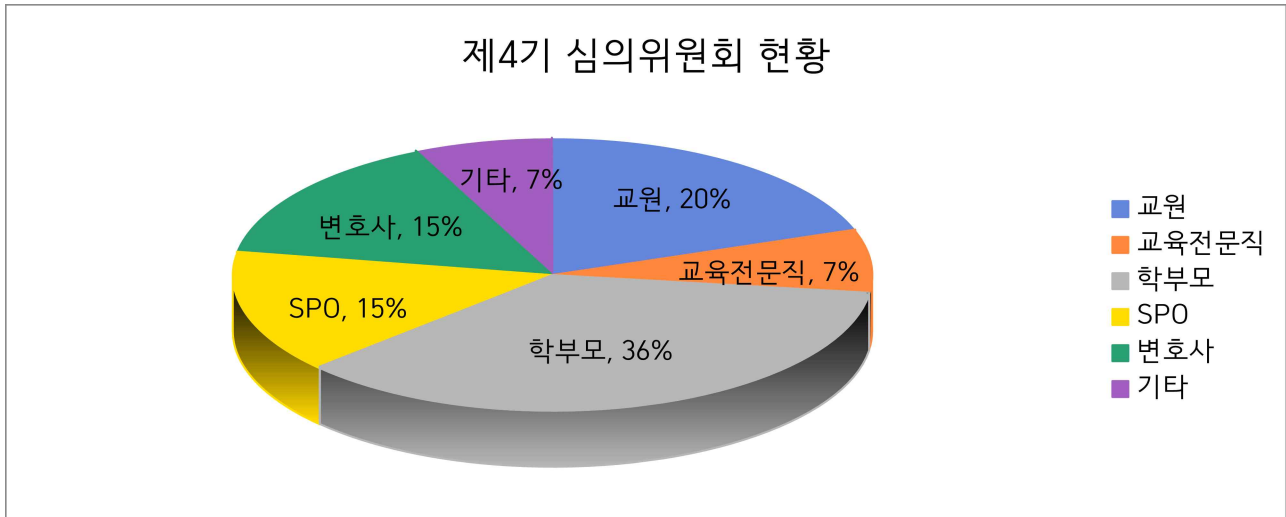
- 관계회복 숙려제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법률 개정 추진
 - 105회(2025.11.)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「관계회복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법령 개정」 안건 제출.
 - 17개 시도교육청 개정 안건 모두 동의

■ 안건으로 제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(안)

[신설]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(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)

- ① 학교의 장은 제13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학교폭력을 최초로 인지한 때로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단계에 걸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(이하 "관계회복 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학교의 장은 초등학교 1학년~3학년 학생 간 제1항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피해학생, 가해학생 및 각 그 보호자는 정당한 이유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.

- 과제
 -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정 미흡
 - 학생·교원·학부모의 관계회복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인식 확산



※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체 위원(50명 이내) 중 학부모위원은 1/3이상 위촉 필수

※ 학교폭력피해학생 학부모 3명 위촉

○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변화

- 제3기 변호사 위원: 69명(13.3%) → 제4기 변호사 위원: 78명(15%) 위촉

- 제3기 학부모 위원: 198명(40%) → 제4기 학부모 위원: 180명(36%) 위촉

○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상 평가 실시

- 2026년 12월 11개 교육지원청 제3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80점 미만으로 평가된 36명은 제4기 위원으로 재위촉하지 않음(전문성, 공정성, 성실성의 평가기준으로 평가)

○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본청 주관 연수 실시

- 2026년 2월말~3월 중순까지 본청에서 11개 교육지원청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총회 및 연수 시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심의위원 대상 조치판정 기준 등 역량 강화 연수 실시

- 2026. 3. 18. 본청 주관 11개 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

○ 과제

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본청 주관 연수 및 지원청 주관연수 지속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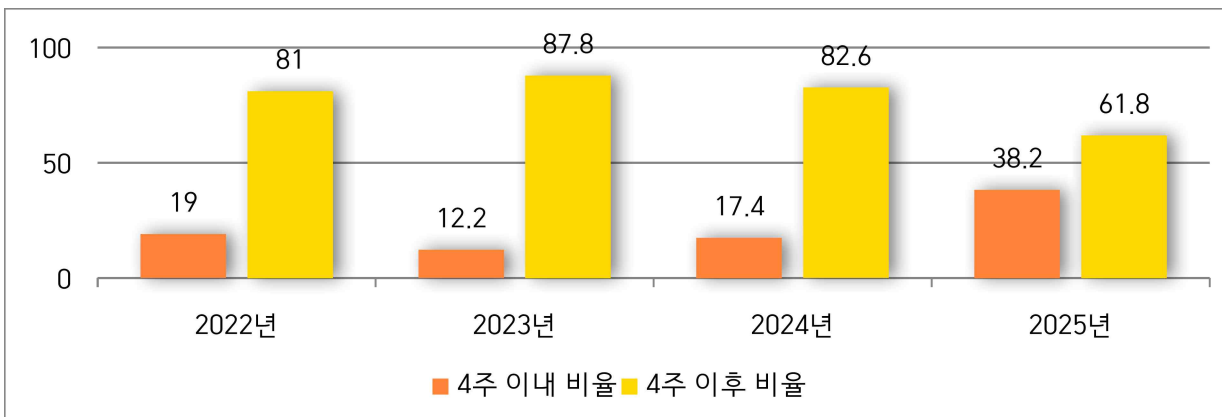
-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개정(교육부 고시)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

3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지연 해결을 위한 노력

- 2022~2025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현황

연도	4주 이내 심의 건수 비율	4주 이후 심의 건수 비율
2022년	19.0%	81.0%
2023년	12.2%	87.8%
2024년	17.4%	82.6%
2025년	38.2%	61.8%



- 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해소를 위한 자체 노력
 - 2025년 7월 학교생활교육과 조직 개편 및 3개 교육지원청(강동송파, 강서양천, 강남서초) 1명씩 인력 증원
 - 학교생활교육과 자체 인원 조정을 통한 심의위원회 간사 확보
 - 2024년 대비 4주 이내 심의 건수 비율이 17.4%에서 38.2%로 2배 이상 향상
- 과제
 - 단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, 속기사 활용 등으로 심의 지연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근본적으로 역량을 갖춘 정규 인력 필요
 - 과도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: 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위원회 준비 및 각종 민원 대응 및 회의록 공개, 정보공개 등의 업무가 과중하나 인력에는 한계가 있음
 - 심의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지연, 학교의 피·가해학생 분리 지도의 어려움 가중

학교복합시설 제도·시설·절차 3대 개선 추진

교육행정국	미래학교추진단장 이해승 ☎6033-6450	팀장 이경호 ☎6463	담당 김병엽 ☎6464
	교육재정과장 정옥진 ☎6033-6360	팀장 김성진 ☎6375	담당 최종민 ☎6476

□ 추진 배경

- 학교 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확대 추세
 - 초·중·고 139개교에서 수영장·체육관 등 243개 시설 운영 중

구분	학교 기준			시설 기준							계
	공립	사립	계	수영장	체육관	주차장	도서실	정보센터	문화시설	기타*	
초	79	-	79	35	53	31	15	3	3	8	148
중	35	1	36	7	28	10	7	4	2	2	60
고	16	8	24	6	11	10	2	-	3	3	35
계	130	9	139	48	92	51	24	7	8	13	243

※ 기타 시설(13개): 어린이집(7), 별도체육시설(3), 교육센터(2), 어린이 돌봄센터(1)

- 양적 확대에 비해 제도·시설·절차 미흡하여 현장 갈등 및 행정 비효율 발생
- 3대 분야 6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, 학교복합시설 운영 효율 도모

□ 추진 내용

학교복합시설 제도·시설·절차 3대 개선 추진

제도개선 2개 과제	시설개선 2개 과제	절차개선 2개 과제
<p>과제 1</p> <p>학교복합시설 교육규칙 제정 범죄예방디자인 기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</p> <p>과제 2</p> <p>시설적립금 요율 상향 현재 적립금 기준 분석 적정 적립금 요율 개선추진</p>	<p>과제 1</p> <p>수영장 수도계량기 조기분리 수도분리, 별도 계량기 설치 공공요금 체납 분쟁 방지</p> <p>과제 2</p> <p>수영장 설계기준 표준화 표준과업지시서 제작 배포 원활한 유지관리 보수</p>	<p>과제 1</p> <p>사용허가 매뉴얼 개정 이행보증금 제도 보완 장기회원권 발행 방법 개선</p> <p>과제 2</p> <p>수영장 시설 인계인수 표준매뉴얼 표준 체크리스트 매뉴얼 개발 시범적용 후 전면 규정화</p>

○ 제도 개선

- (교육규칙 제정) 범죄예방디자인 및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 기준 마련
 -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의 법적근거 명확화 및 범죄발생 최소화 장치 구비

※ 범죄예방디자인 기법(CPTED)

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범죄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

- (시설적립금 상향) 시설사용료를 반영한 시설적립금 적립기준 상향
 - 면적기준→시설사용료 수입을 반영하여 유지보수 재원 안정적 확보

○ 시설 개선

- (수도 분리) 학교시설과 위탁시설 간의 수도 분리 사업 조기 완료 추진
 - 위탁업체의 수도 요금 체납 문제로 인한 소모성 분쟁 사전 방지
- (설계 기준 표준화) 수영장 시설의 표준화된 설계 가이드라인 구축
 - 표준화된 설계를 통한 시설·설비 표준화로 유지관리 효율 향상

○ 절차 개선

- (사용허가 매뉴얼) 이행보증금 제도 보완 및 장기 회원권 발행 방법 개선
 - 운영업체 책임 강화와 이용자 피해 예방·보호를 위한 매뉴얼 개정
- (인계인수 표준매뉴얼) 주요 시설 체크리스트 및 이력관리 매뉴얼 보급
 - 수영장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제품명, 규격, 작동상태 등 표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체계적인 이력 관리 도모

□ 향후 계획

- 교육규칙 제정('26.6월)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시설적립금 기준 개편('26.9월)
- 수영장 설계 표준화를 위한 TF 운영('26.5월) 및 표준과업지시서 배포('26.9월)
- 수영장 시설 인계인수 표준매뉴얼 제작·배포를 통한 학교 행정업무 체계화('26.10월)